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1. 12.



김 태 형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김태형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안 발의 정족수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및 제5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정례회기를 기존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기존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의원 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동안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통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1215
----------	----------

발의일자: 2021. 11. 25.

발의자: 김태형, 김화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안 발의 정족수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5조)
- 나. 정례회기를 기존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안 제5조)
- 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의원 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신설)

###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불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회의 총일수”를 “총 회의일수”로, “이내”를 “내”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례회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정례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4조제1호 단서 중 “의원 총선거가”를 “전국동시지방선거가”로 하고, 같은 호 단서의 후단 중 “의원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2월 1일”을 “11월 16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34조”를 “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7조”를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 ·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u>44</u>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u>54</u>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u>이내</u>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p> <p>제3조(회기)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단축할 수 있다. &lt;후단 신설&gt;</p> <p>&lt;신 설&gt;</p>	<p>제1조(목적) ----- ----- 제<u>5</u></p> <p>3조, 제<u>54</u>조 및 제<u>56</u>조----- ----- ----- ----- ----- ----- -----.</p> <p>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 ----- ----- ----- -----. ----- 총 회의일 수----- ----- ----- 내----- -----.</p> <p>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단축할 수 있다.</p> <p>② 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p>

제4조(집회일)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 ·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집회일) 정례회 -----  
-----  
-----. 다만, 그 날이 토요일 ·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  
-----. ----- 전국동시지방선거가  
-----  
-----  
----- ----- 전국동시지방선거  
-----  
-----  
-----  
-----  
-----.

2. ----- 11월 16일-----.  
<삭 제>

토요휴무일 ·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  
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 · 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 · 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③ (생략)

<신설>

제6조 (생략)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 법  
제150조-----  
-----  
-----  
-----  
-----  
-----  
-----  
② -----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안의 제출 ·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 【 현행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2015.1.2.31.)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단축할 수 있다.

**제4조(집회일)**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9., 2016.5.2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토요휴무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08. 5. 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08. 5. 9.)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